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김경이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김경이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11
----------	-----

발의연월일 : 2025년 2월 3일

발의자 : 경수현, 고영옥, 김경이, 김육영,
소형준, 오중균, 이관우, 이용진,
이인순, 이호건, 임태근, 정해숙

1. 제안이유

디지털 사회로 전환되면서 생활의 편리성은 높아졌지만, 정보취약 계층의 디지털 정보의 접근과 활용 등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성북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및 보호자가 신체적·인지적 제약 등으로 불편함 없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정보격차 해소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실태조사 및 실행계획의 수립(안 제5조 및 제6조)

- 라. 추진사업과 민간위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및 제8조)
- 마. 홍보(안 제9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능정보화 기본법」 등
-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 다. 부서협의 : 어르신·장애인복지과
- 라. 입법예고 : 2025. 2. 6. ~ 2025. 2. 12.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정대리인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3. “지능정보화”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지능정보화를 말한다.
4.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격차를 말한다.
5. “정보접근권”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과 보호자가 다양한 분야의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정보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 마련을 위해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접근 현황과 정보화 활용 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실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장애인 및 보호자에게 디지털 정보 제공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및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접근권 보장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추진사업) 구청장은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콘텐츠

보급

2. 장애인 및 보호자의 지능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민간위탁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장애인 정보통신서비스 사회·복지·정책 소식 발송 업무

2. 장애인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일자리 정보 제공

3.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이버교육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무 위탁 시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홍보) 구청장은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구정 및 지원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